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u>투자대상 자산의 종류</u> 및 <u>위험도</u> 를 감안하여 <u>2등급으로 분류</u>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active.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성기준일 : 2021. 1.27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 2. 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8년 4월 5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 제1부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2부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 제3부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 보고서
  -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0.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본 투자신탁을 모자형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현재 기준)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본 투자신탁을 모자형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현재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소규모로 전환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세제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2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나. 과세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투자비율 및 투자비율 유지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총자산 대비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는 매 6개월마다 투자기간의 평균 비율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경제 상황 및 벤처기업시장의 활성화 정도, 각 투자대상 자산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가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이미 공제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차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벤처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에 비해 높은 위험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으며,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한정된 물량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여 예상보다 수익이 작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1.01.27)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 코드: C6489)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빌체·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성장성이 높은 코스닥 기업과 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형주에 투자하되, 코스닥 및 벤처기업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십 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여 벤처기업의 IPO, CB, BW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형주로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 중소형 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 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택-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350%	0.560%	1.38%	246	397	554	894	1,903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C)	없음	1.690%	0.900%	1.58%	182	368	565	986	2,240
	수수료선택-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070%	0.280%	1.0%	169	292	420	697	1,519
	수수료미정구-온라인(Ce)	없음	1.240%	0.450%	1.17%	137	277	425	742	1,686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0.940%	0.150%		121	231	345	592	1,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li>-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li><li>-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페투자펀드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페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페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페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li><li>-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01/28~ 21/01/27	19/01/28~ 21/01/27						
	수수료선택-오프라인(A)	2018-04-05	54.74	30.32						12.73
	비교지수(%)	2018-04-05	38.06	17.29						6.74
	수익률 변동성(%)	2018-04-05	32.03	26.75						2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li><li>-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li><li>-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i></ul>										

운용전문 인력	성명 권동일	생년 1984	직위 책임(VP)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8년 9개월																
				집합투자 기구 수 2개	운용규모 340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35.54%	최근2년 44.30%	최근1년 35.23%	최근2년 39.93%																	
<p>-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p> <p>-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p> <p>-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p> <p>-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p> <p>-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 <td>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자산과 같은 투자항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주식등 가격변동 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 </tr> <tr> <td>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벤처기업과 대형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신탁보다 개별종목의 가격변동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의 매수 및 보유기간 등)</td> <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 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2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td> </tr> <tr> <td>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2 (투자신탁의 합병, 해지, 전환 등)</td> <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령상 정해진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이 합병, 해지, 모자구조 전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 </tr> <tr> <td>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3 (투자비율 유지 조건 등)</td> <td>이 투자신탁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투자비율 및 투자비율 유지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총자산 대비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증권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는 매 6개월마다 투자기간의 평균 비율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자산과 같은 투자항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벤처기업과 대형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신탁보다 개별종목의 가격변동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의 매수 및 보유기간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 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2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2 (투자신탁의 합병, 해지, 전환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령상 정해진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이 합병, 해지, 모자구조 전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3 (투자비율 유지 조건 등)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자산과 같은 투자항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벤처기업과 대형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신탁보다 개별종목의 가격변동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의 매수 및 보유기간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 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2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2 (투자신탁의 합병, 해지, 전환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령상 정해진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이 합병, 해지, 모자구조 전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3 (투자비율 유지 조건 등)	이 투자신탁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투자비율 및 투자비율 유지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총자산 대비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증권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는 매 6개월마다 투자기간의 평균 비율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그러나, 해당 요건은 경제 상황 및 벤처기업시장의 활성화 정도, 각 투자대상 자산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빼는 요소로, 당사가 불가피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자산 매각 등을 실행함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미 공제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차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벤처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에 비해 높은 위험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없음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b>* 세제혜택계좌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해당사항없음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삼성 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02-3774-7880, 콜센터:080-377-4777)		
모집기간	2018년 4월 5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총액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효력발생일	2021. 2. 4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samsungactive.co.kr">http://www.samsungactive.co.kr</a> ) 및 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택	판매수수료선택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종비용이 판매수수료미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정구형(C)보다 높은 종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수수료미정구	판매수수료미정구형(C)은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택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종비용이 판매수수료선택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택형(A)보다</b>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b>온라인 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active.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active.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active.co.kr>)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C648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C6490
수수료선취-온라인(Ae)	C649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64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649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C64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6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722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C6496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 예정금액

10조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 1원)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8년 4월 5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samsungactive.co.kr">www.samsungactive.co.kr</a>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C6489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C6490
수수료선취-온라인(Ae)	C649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64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649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C64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64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722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C6496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8. 4. 5	최초 설정
2020. 12. 15	운용역 변경(노한성 운용역 → 권동일 운용역)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16층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4-7880,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권동일	1984	책임(VP)	2개	340억원	35.54%	44.30%	35.23%	39.93%	8년 9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권동일	2010년 12월 ~ 2011년 12월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 2012년 01월 ~ 2012년 11월 삼성자산운용 LT주식운용본부 2012년 12월 ~ 2014년 02월 삼성자산운용 기관주식운용팀 2014년 03월 ~ 2016년 12월 삼성자산운용 Value주식운용본부 2017년 01월 ~ 現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1팀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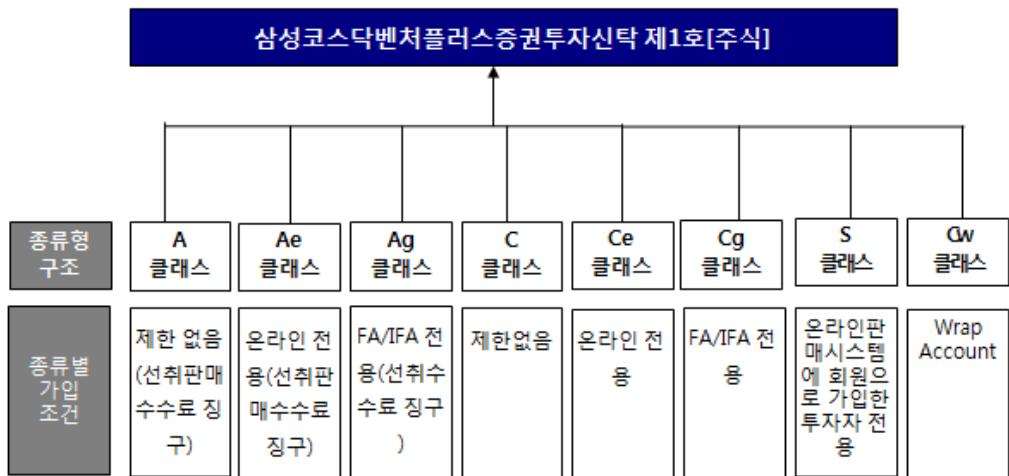
운용역	운용 기간
노한성	2018. 3.30 ~ 2020.12.14
권동일	2020.12.15 ~ 현재

주1) 2021. 2. 4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증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선취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8. 4. 5	가입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8. 4. 5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미설정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8. 4. 5	가입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8. 4. 5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미설정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2018. 4. 5	Wrap ACCOUNT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종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 의 1.0% 이내	-	없음	0.75	0.56	0.02	0.02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 의 0.5% 이내	-	없음	0.75	0.28	0.02	0.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납입금액 의 0.7% 이내	-	없음	0.75	0.39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없음	0.75	0.90	0.02	0.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없음	0.75	0.45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없음	0.75	0.63	0.02	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없음	0.75	0.00	0.02	0.0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이내	없음	0.75	0.15	0.02	0.02
----------------	---	-----------------------------------	----	------	------	------	------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가. 이 투자신탁은 성장성이 높은 코스닥 기업과 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형주에 투자하되, 코스닥 및 벤처 기업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벤처기업의 IPO, CB, BW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형주로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집합투자증권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4)	벤처기업 및 벤처 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등	50% 이상 (단, 투자대상 세부내 역의 가목1)에 따른 투 자 15% 이상)	<p>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p> <p>1)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p> <p>2) 타인 소유의 벤처기업 주식 매입에 의한 투자</p> <p>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 중소기 업 또는 조특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 계액이 차지하는 비율</p>
5)	단기대출, 금융기 관 예치	-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p> <p>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p> <p>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 함)</p> <p>다.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6)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 가능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 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 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2), 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4)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4)의 요건을 최초로 달성하는 날까지(투자신탁 최초설 정일로부터 6개월 내로 함) 및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간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투자 대상 비율의 적용은 4)의 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본문 및 부분 후단에 따 른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계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6), 7), 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 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2)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동일종목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모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한도 초과	<p>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계열회사 주식 투자 한도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음	
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	<p>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운용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의 신주, IPO, CB(무담보전환사채) 및 BW(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하고,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형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다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 관련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40% 이내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2) 벤처기업 신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코스피/코스닥 우량주 등에 분산투자합니다.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미만으로 합니다.)
  - ① 벤처기업 신주 등(15% 이상): 기업 탐방, IR미팅, 투자대상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을 통한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코스닥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받은 공모주는 목표주가 도달 시 매도합니다. 그 외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 예정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 CB, BW 등에도 해당 기업 분석을 통해 투자 규모 및 기간을 결정하여 투자합니다.
  - ②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벤처기업 신주 포함하여 50% 이상): 업종 내 기업 경쟁력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대비 저 평가 된 시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기업 경영환경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코스피/코스닥 우량주(50% 미만): 성장 산업군에서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우량주를 발굴하여 대형주로 성장할 때까지 장기투자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 투자전략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1) 비교 지수: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x 36% + Call x 10%
- 2) 지수 소개 및 선정 사유: KOSPI 지수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수이며, KOSDAQ 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이므로 벤처 기업과 코스닥 및 코스피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수익 구조

- 해당사항 없음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 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신탁계약 및 신고서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미달 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자체 없이 처분하는 등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특정주식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벤처기업과 대형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신탁보다 개별종목의 가격변동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해당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해당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 등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과 의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벤처기업과 대형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며,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업종 및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크에 얹매이지 않는 Active 주식 운용전략을 수행하므로 벤치마크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1 (투자신탁의 매수 및 보유기간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투자신탁의 매수시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2022년 12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완료된 투자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투자자별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의 합계액으로 3천만원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2 (투자신탁의 합병, 해지, 전환 등)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령상 정해진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이 합병, 해지, 모자구조 전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투자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되며,

<b>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2 (투자신탁의 합병, 해지, 전환 등)</b>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본 투자신탁을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미 공제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차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p>
<b>소득공제 혜택 관련 위험 3 (투자비율 유지 조건 등)</b>	<p>이 투자신탁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조세특례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투자비율 및 투자비율 유지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총자산 대비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상장의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는 매 6개월마다 투자기간의 평균 비율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p>그러나, 해당 요건은 경제 상황 및 벤처기업시장의 활성화 정도, 각 투자대상 자산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로, 당사가 불가피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자산 매각 등을 실행함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미 공제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차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p>
<b>벤처기업 투자위험</b>	<p>이 투자신탁은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벤처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에 비해 높은 위험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b>공모주 참여 제한 위험</b>	<p>이 투자신탁은 공모주에 투자함에 있어, &l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gt; 등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삼성증권)이 인수하는 공모증권에는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 투자가 불가능하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p>
<b>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혜택 미적용 위험</b>	<p>이 투자신탁은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p>
<b>비상장주식투자위험</b>	<p>이 투자신탁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들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이므로 기업의 작은 규모나 낮은 시장점유율로 인해 업계 경쟁이나 시장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회사들의 실적은 예측하기 어렵고 공시대상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불완전 정보하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 취득원가 또는 자산운용사의 유가증권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 거래상대방을 직접 찾아야 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여 예상보다 수익이 작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p>
<b>주식관련사채 투자 위험</b>	<p>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 채권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내 상장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b>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위험</b>	<p>이 투자신탁은 투자부적격 등급 채무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이하 같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적격 등급의 채무증권보다 원리금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여겨지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 능력 면에서 상당히 투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증권입니다. 이러한 투자부적격 등급 채무증권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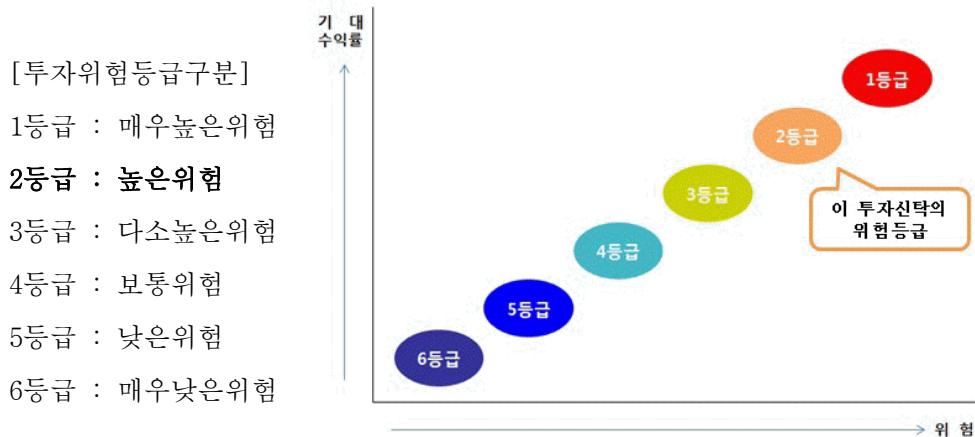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위험	경제조건 악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수익률이 투자적격 등급 채무증권에 비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증권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시기에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더 높은 투자손실위험(시장, 신용, 유동성 위험 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동성 제약 종목의 일부 편입가능성	유동성 제약이 있는 벤처기업주식 등의 일부 편입 가능성으로 대량환매시 기준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매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주식 등은 환매에 대응하기 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전략상의 투자 손실의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중소형주 등에 주로 투자함에 따라, 전체 주식시장의 성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성과는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 대비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종목의 성과가 부진함에도 일부 종목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운용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본 투자신탁을 모자형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현재 기준)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본 투자신탁을 모자형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주식]”(현재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환매가 발생하는 경우, 환매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환매가 발생하여 법령상 정해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에 이 투자신탁에 부여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미 공제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차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의 신주, IPO, CB, BW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형주로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다소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보통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6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li> <li>-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주6)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판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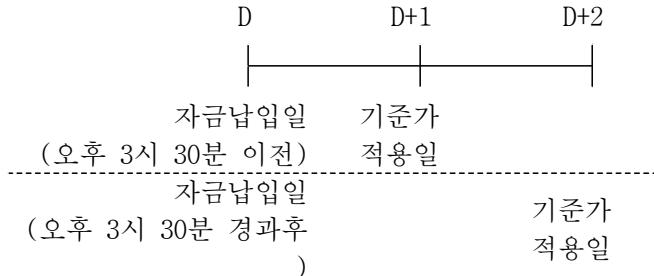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ACCOUNT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기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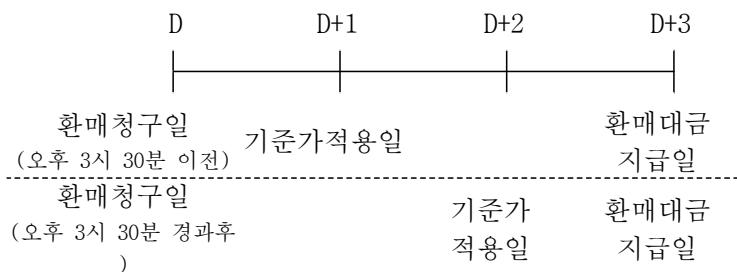
##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3시 30분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3시 30분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온라인(Ae)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없음	환매시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없음	환매시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 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 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 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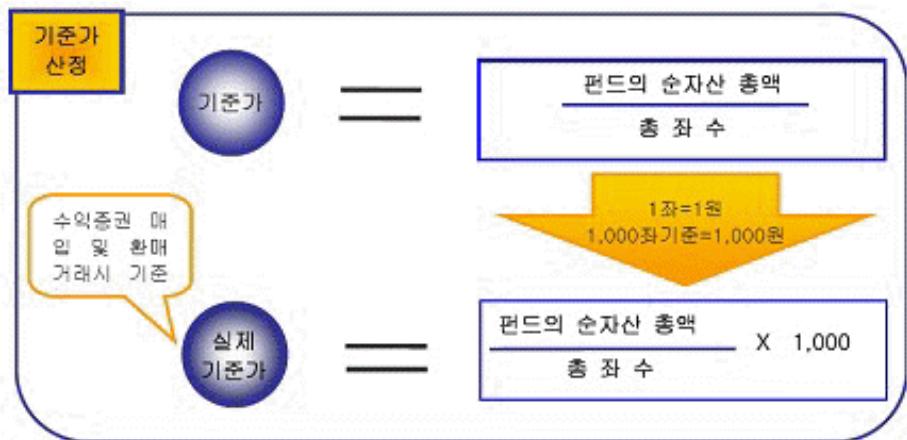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samsungactive.co.kr">http://www.samsungactive.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정구 온라인 용	납입금액의 0.5% 이내	-	없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Ag)	투자자문을 받거 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으 로 선취판매수수 료가 정구되는 수 익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	-	없음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	-	없음	-
수수료미정구-온라인(Ce)	온라인용	-	-	없음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Cg)	투자자문을 받거 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 수익증권	-	-	없음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랩 (Cw)	Wrap ACCOUNT	-	-	없음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	3년 미만 환 매시 환매금 액의 0.15%이 내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2)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클래스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파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75	0.56	0.02	0.02	1.35	1.38	0.003	1.353	1.478	0.0707
수수료선취-온라인(Ae)	0.75	0.28	0.02	0.02	1.07	1.0	0.0029	1.0729	1.1979	0.07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75	0.39	0.02	0.02	1.18	-	실비	1.18	1.305	실비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C)	0.75	0.90	0.02	0.02	1.69	1.58	0.003	1.693	1.818	0.0721
수수료미정구-온라인(Ce)	0.75	0.45	0.02	0.02	1.24	1.17	0.0029	1.2429	1.3679	0.0743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75	0.63	0.02	0.02	1.42	-	실비	1.42	1.545	실비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랩(Cw)	0.75	0.00	0.02	0.02	0.79	-	0.002	0.792	0.917	0.075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75	0.15	0.02	0.02	0.94	-	실비	0.94	1.065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후급	-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비율이나 보수 등은 초기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서 계산된 예상수치입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기타비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6,326	396,586	554,359	893,964	1,903,17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3,951	371,503	515,933	826,818	1,750,678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9,193	291,591	420,108	696,742	1,518,8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6,756	266,382	381,489	629,256	1,365,55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9,587	332,656	472,380	773,135	1,666,8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7,174	307,498	433,838	705,785	1,513,932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1,802	368,491	564,515	986,455	2,240,341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302	343,155	525,701	918,631	2,086,3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6,789	277,254	424,744	742,214	1,685,64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289	251,918	385,930	674,389	1,531,6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4,500	313,153	479,739	838,315	1,903,9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2,000	287,817	440,925	770,490	1,749,8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1,699	185,863	284,736	497,559	1,130,0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199	160,527	245,922	429,734	975,97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1,340	230,539	345,198	592,001	1,325,4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8,859	205,241	306,442	524,278	1,171,622

- 주)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 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클래스는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감소합니다.

##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zero"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차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가 자동이월되면서, 환매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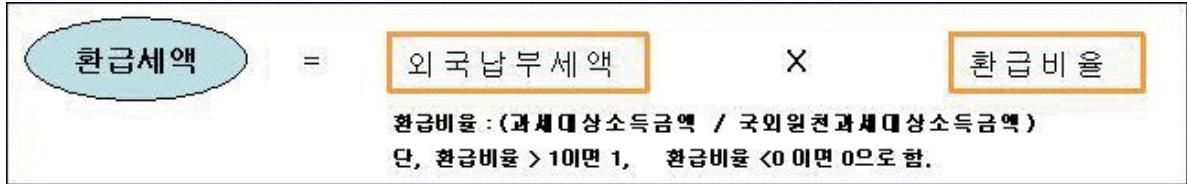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계약기간	3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 가입한 판매회사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감면세액추경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0억미만으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2기 (2020. 4. 4)	1기 (2019. 4. 4)
자산총계	10,715	16,939
운용자산	10,636	16,823
증권	9,996	15,843
파생상품	0	0
부동산/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640	981
기타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79	116
부채총계	56	531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56	531
자본총계	12,686	16,408
원본	14,651	18,167
수익조정금	636	616
이익잉여금	-2,602	-2,375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2기 (2019. 4. 5~2020. 4. 4)	1기 (2018. 4. 5~2019. 4. 4)
운용수익	-2,685	-2,126
이자수익	9	18
배당수익	106	139
매매/평가차익(순)	-2,800	-2,283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184	249

항목	2기 (2019. 4. 5~2020. 4. 4)	1기 (2018. 4. 5~2019. 4. 4)
관련회사 보수	183	248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0	0
당기순이익	-2,869	-2,375
매매회전율	38.20	102.43

#### 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2기 (2020. 4. 4)	1기 (2019. 4. 4)
자산총계	10,715	16,939
운용자산	10,636	16,823
유가증권	9,996	15,843
지분증권	9,996	15,843
채무증권	0	0
수익증권	0	0
파생상품	0	0
현금및 예치금	640	981
현금및 현금성자산	640	981
증거금	0	0
기타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79	116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0
미수이자	0	0
미수배당금	79	116
부채총계	56	531
기타부채	56	53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463
기타미지급금	14	15
미지급보수	42	54
기타미지급비용	0	0
자본총계	12,686	16,408
원본	14,651	18,167

항목	2기 (2020. 4. 4)	1기 (2019. 4. 4)
이익잉여금	-1,966	-1,759
수익조정금	636	616
이월이익잉여금	267	0
당기순이익	-2,869	-2,375
부채및 자본총계	12,741	16,939
총좌수	14,297	17,972
기준가격	748	916

#### 다.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2기 (2019. 4. 5~2020. 4. 4)	1기 (2018. 4. 5~2019. 4. 4)
운용수익(손실)	-2,685	-2,126
투자수익	115	157
이자수익	9	18
배당수익	106	139
매매차익	1,113	1,225
지분증권매매이익	1,113	1,225
매매차손	-1,947	-1,482
지분증권매매손실	-1,947	-1,482
평가손익	-1,967	-2,026
지분증권평가손익	-1,967	-2,026
운용비용	184	249
운용수수료	99	134
수탁수수료	3	4
판매수수료	79	107
사무관리수수료	3	4
기타비용	0	0
당기순이익	-2,869	-2,375
좌당순이익	-0.20	-0.13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화, 억원)

클래스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0.4.5 ~2020.10.4	89	89	2	2	49	49	42	42
	2019.4.5 ~2020.4.4	108	108	2	2	21	21	89	89
	2018.4.5 ~2019.4.4	49	49	74	74	15	15	108	108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0.4.5 ~2020.10.4	13	13	2	2	7	7	8	8
	2019.4.5 ~2020.4.4	15	15	1	1	3	3	13	13
	2018.4.5 ~2019.4.4	7	7	11	11	3	3	15	15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C)	2020.4.5 ~2020.10.4	33	33	1	1	15	15	19	19
	2019.4.5 ~2020.4.4	41	41	2	2	10	10	33	33
	2018.4.5 ~2019.4.4	30	30	34	34	23	23	41	41
수수료미정구-온라인(Ce)	2020.4.5 ~2020.10.4	10	10	13	13	12	12	11	11
	2019.4.5 ~2020.4.4	15	15	0	0	5	5	10	10
	2018.4.5 ~2019.4.4	8	8	12	12	5	5	15	15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랩(Cw)	2020.4.5 ~2020.10.4	2	2	0	0	0	0	2	2
	2019.4.5 ~2020.4.4	3	3	0	0	1	1	2	2
	2018.4.5 ~2019.4.4	5	5	4	4	6	6	3	3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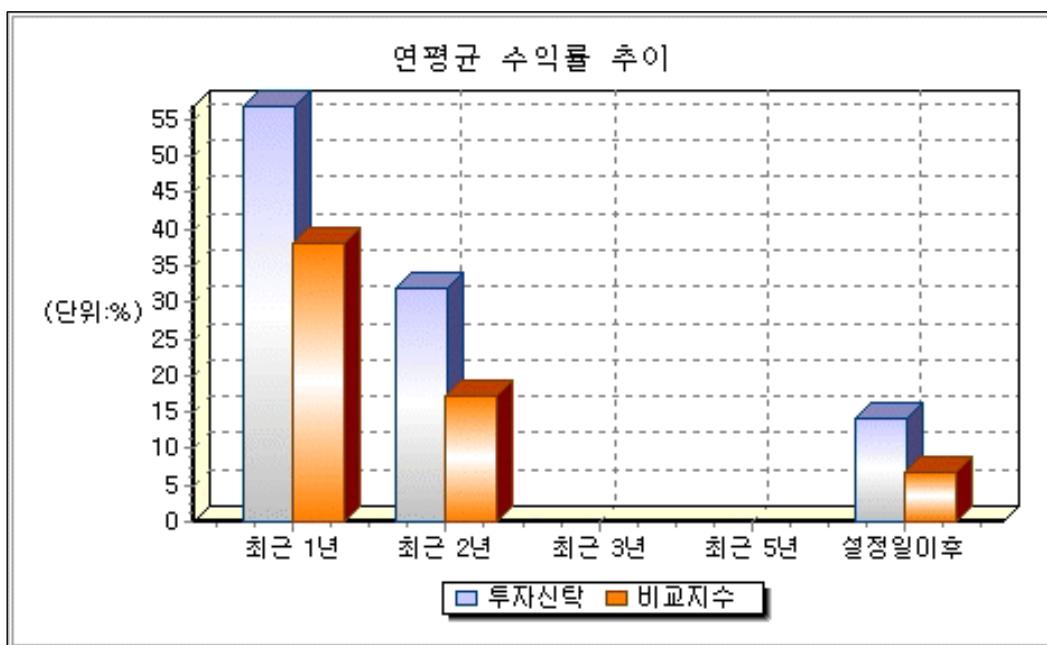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

##### (1)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연도	최근 1년 (20.01.28 ~21.01.27)	최근 2년 (19.01.28 ~21.01.27)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3.30 ~21.01.27)
투자신탁	56.76 %	32.04 %			14.25 %
비교지수	38.06 %	17.29 %			6.74 %
수익률변동성	32.03 %	26.75 %			24.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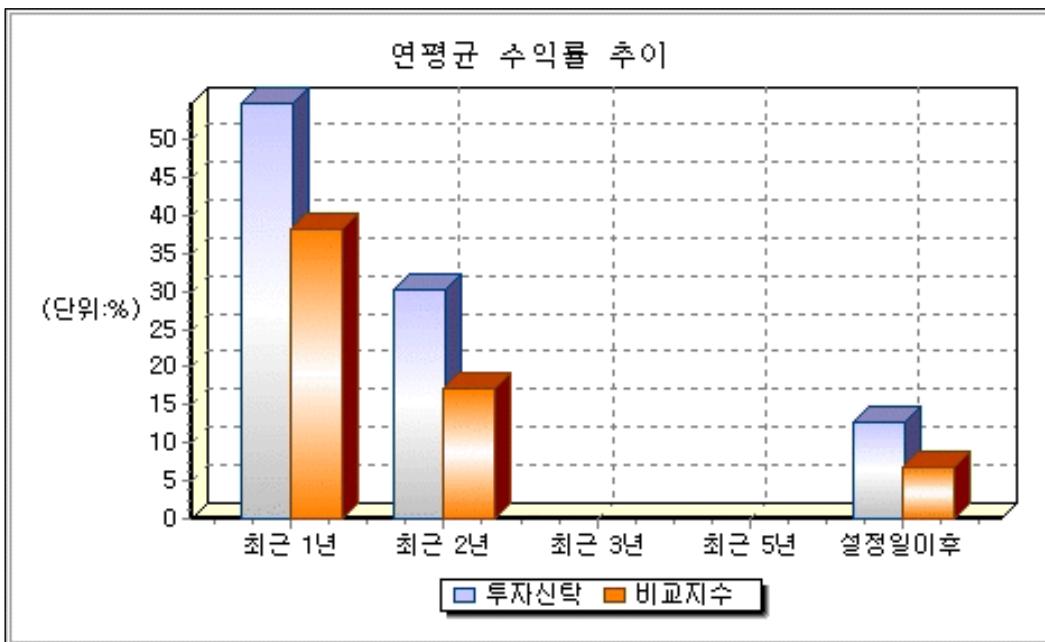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 (2)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 (20.01.28 ~21.01.27)	최근 2년 (19.01.28 ~21.01.27)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4.05 ~21.01.27)
투자신탁	54.74 %	30.32 %			12.73 %
비교지수	38.06 %	17.29 %			6.74 %
수익률변동성	32.03 %	26.75 %			24.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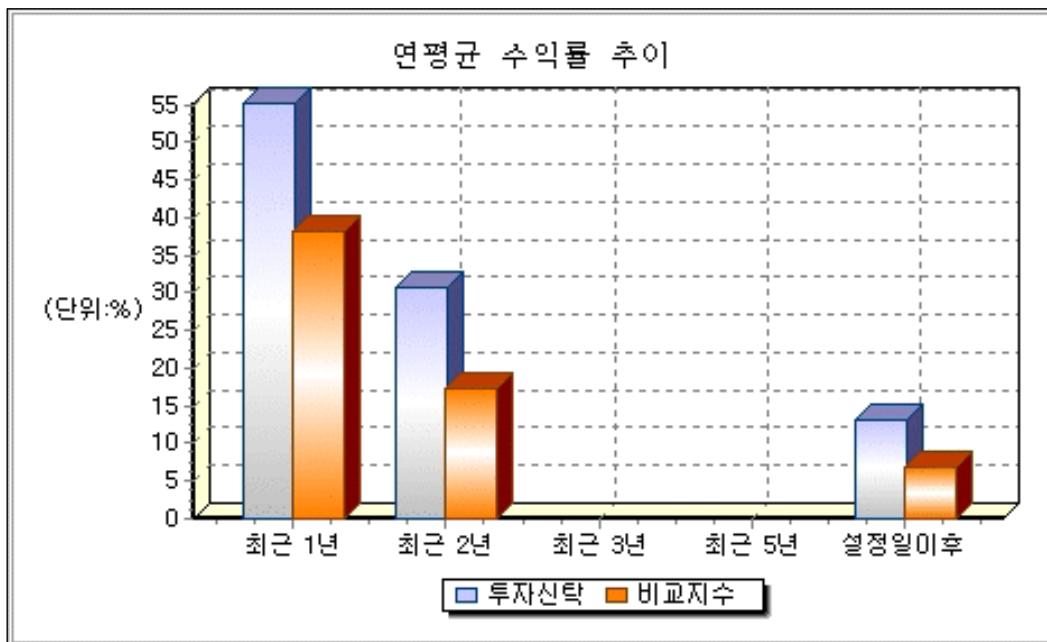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3)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e(수수료선취-온라인)

연도	최근 1년 (20.01.28 ~21.01.27)	최근 2년 (19.01.28 ~21.01.27)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3.30 ~21.01.27)
투자신탁	55.16 %	30.67 %			13.04 %
비교지수	38.06 %	17.29 %			6.74 %
수익률변동성	32.03 %	26.75 %			24.68 %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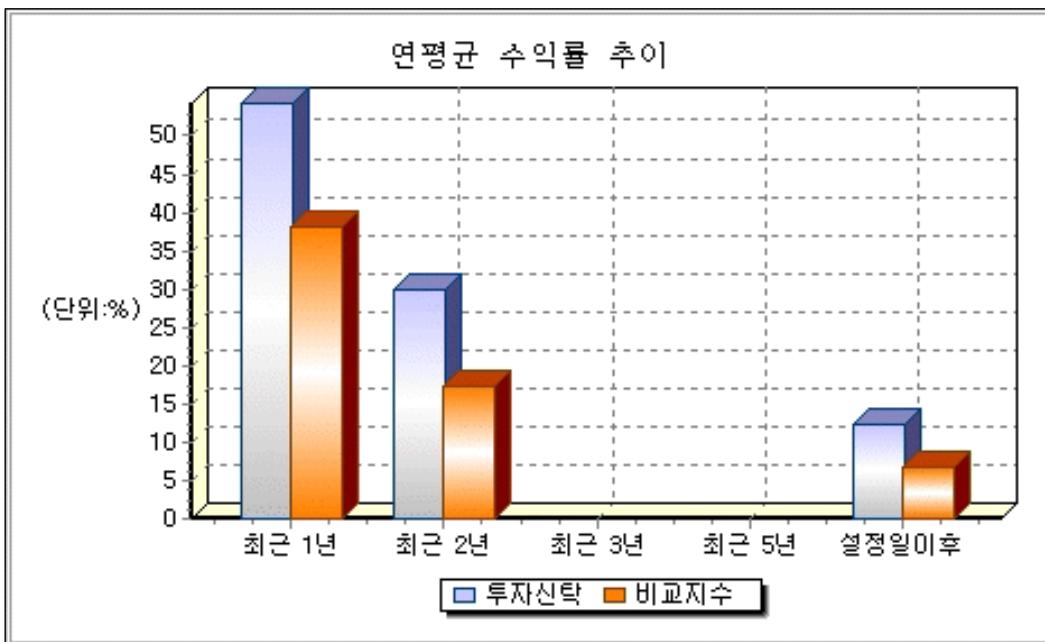
(4)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 (20.01.28 ~21.01.27)	최근 2년 (19.01.28 ~21.01.27)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3.30 ~21.01.27)
투자신탁	54.24 %	29.89 %			12.35 %
비교지수	38.06 %	17.29 %			6.74 %
수익률변동성	32.03 %	26.75 %			24.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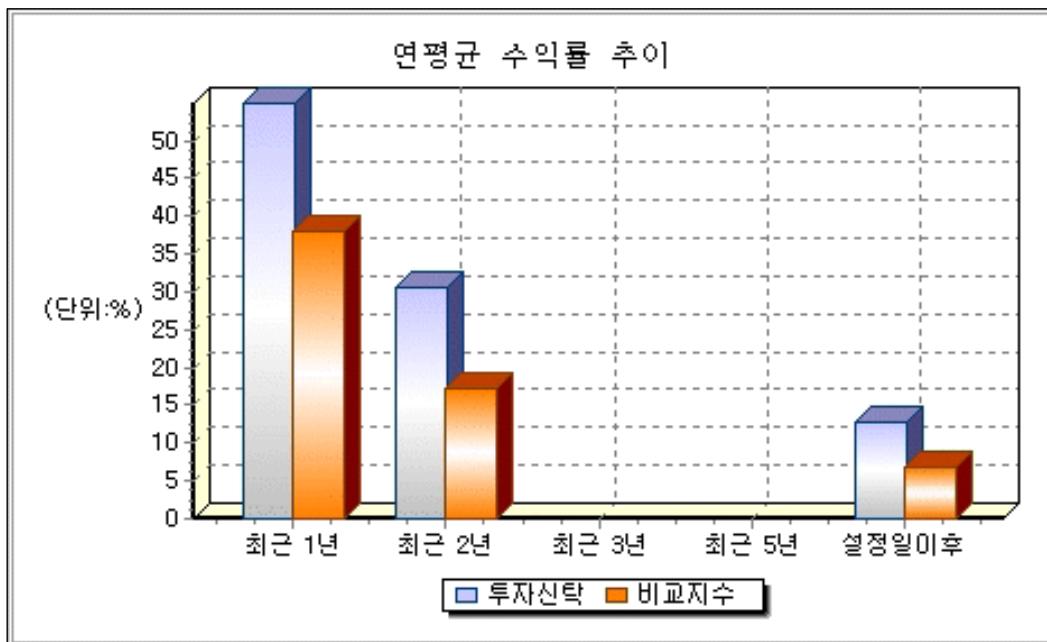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6)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연도	최근 1년 (20.01.28 ~21.01.27)	최근 2년 (19.01.28 ~21.01.27)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3.30 ~21.01.27)
투자신탁	54.91 %	30.46 %			12.86 %
비교지수	38.06 %	17.29 %			6.74 %
수익률변동성	32.03 %	26.75 %			24.68 %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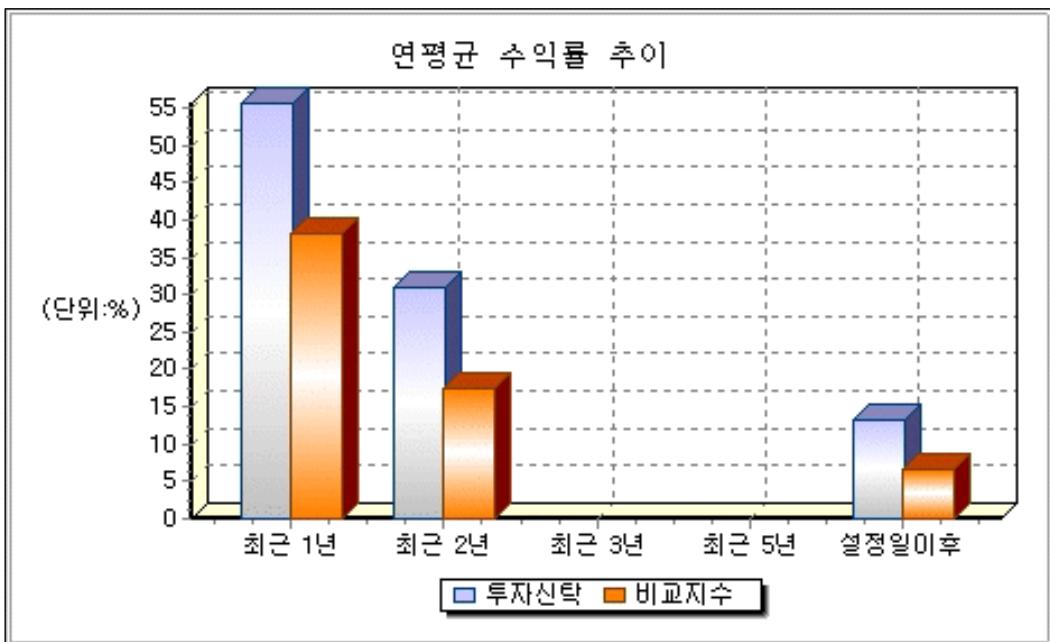
(7)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연도	최근 1년 (20.01.28 ~ 21.01.27)	최근 2년 (19.01.28 ~ 21.01.27)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4.02 ~ 21.01.27)
투자신탁	55.58 %	31.03 %			13.36 %
비교지수	38.06 %	17.29 %			6.74 %
수익률변동성	32.03 %	26.75 %			24.68 %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9)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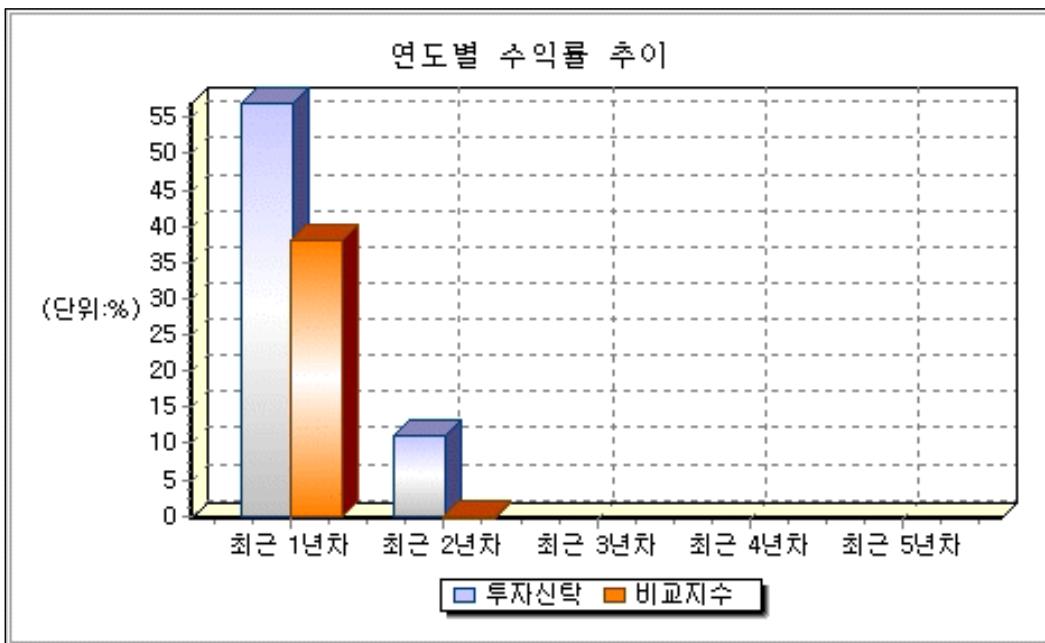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연도	최근 1년차 (20.01.28 ~21.01.27)	최근 2년차 (19.01.28 ~20.01.27)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6.96 %	11.17 %			
비교지수	38.18 %	-0.39 %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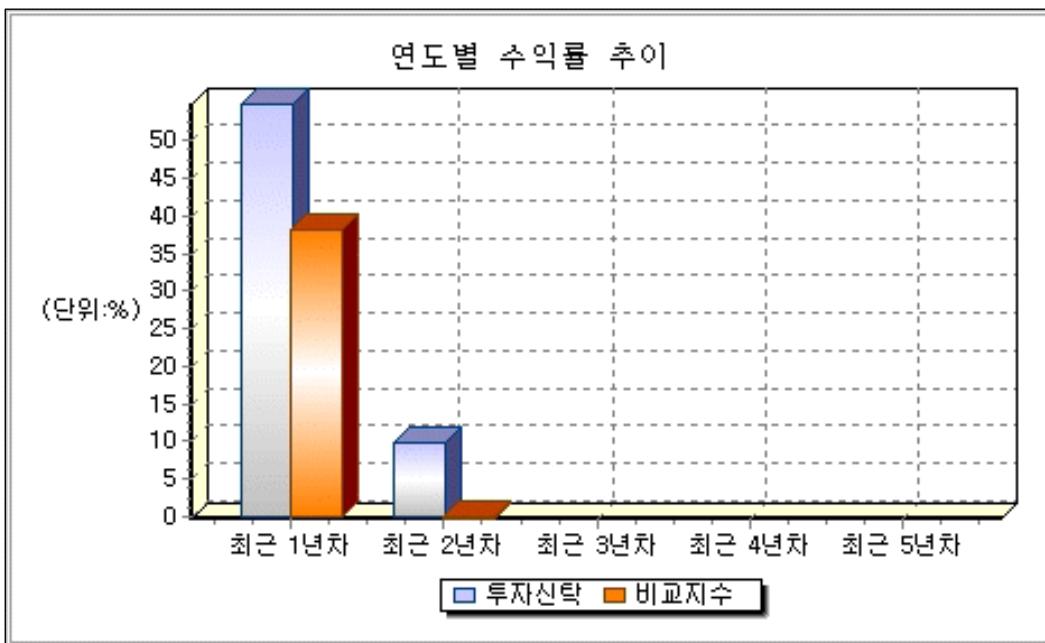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0.01.28 ~21.01.27)	최근 2년차 (19.01.28 ~20.01.27)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4.92 %	9.69 %			
비교지수	38.18 %	-0.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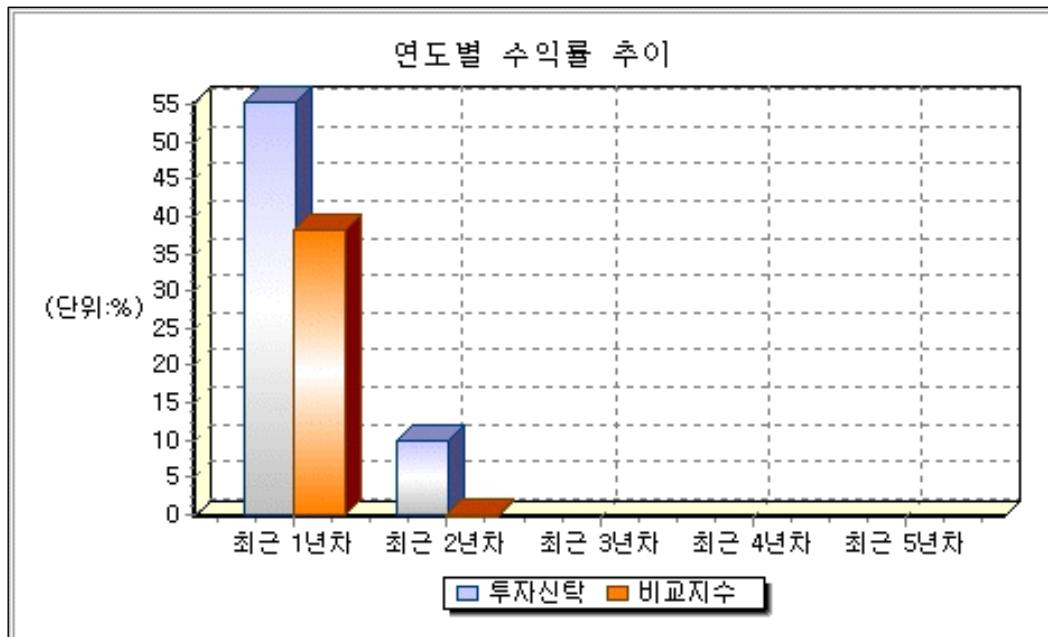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e(수수료선취-온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0.01.28 ~21.01.27)	최근 2년차 (19.01.28 ~20.01.27)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5.34 %	10.00 %			
비교지수	38.18 %	-0.39 %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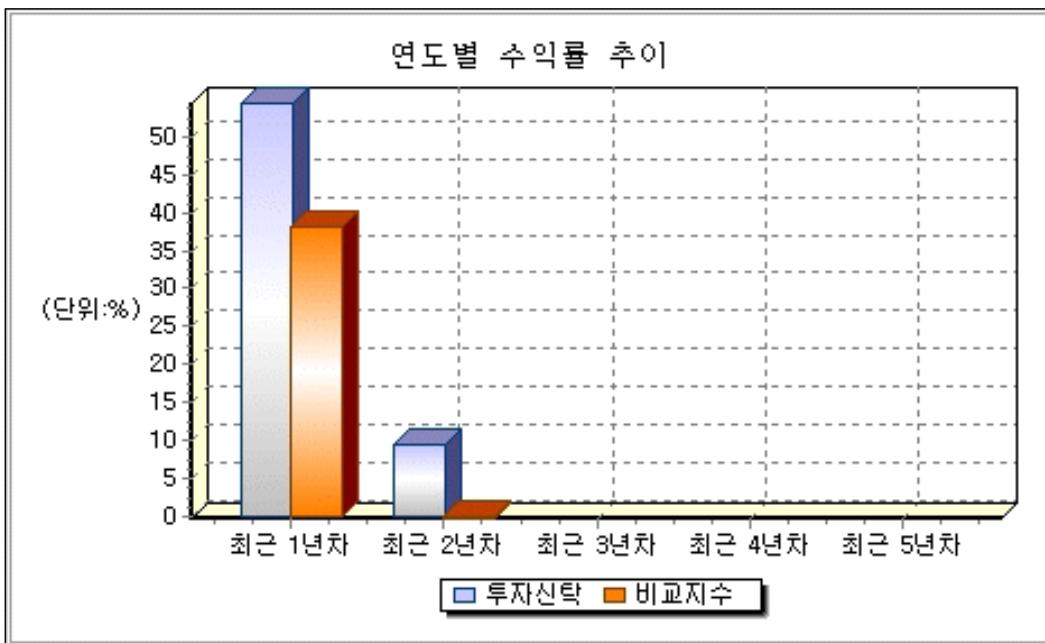
(4)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0.01.28 ~21.01.27)	최근 2년차 (19.01.28 ~20.01.27)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4.42 %	9.33 %			
비교지수	38.18 %	-0.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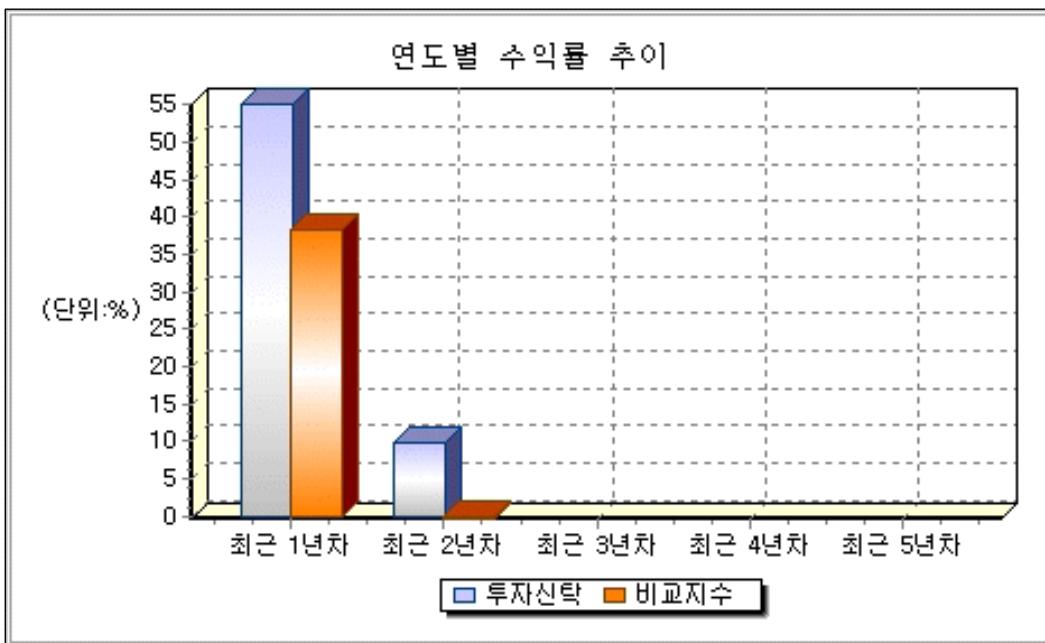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0.01.28 ~21.01.27)	최근 2년차 (19.01.28 ~20.01.27)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5.10 %	9.81 %			
비교지수	38.18 %	-0.39 %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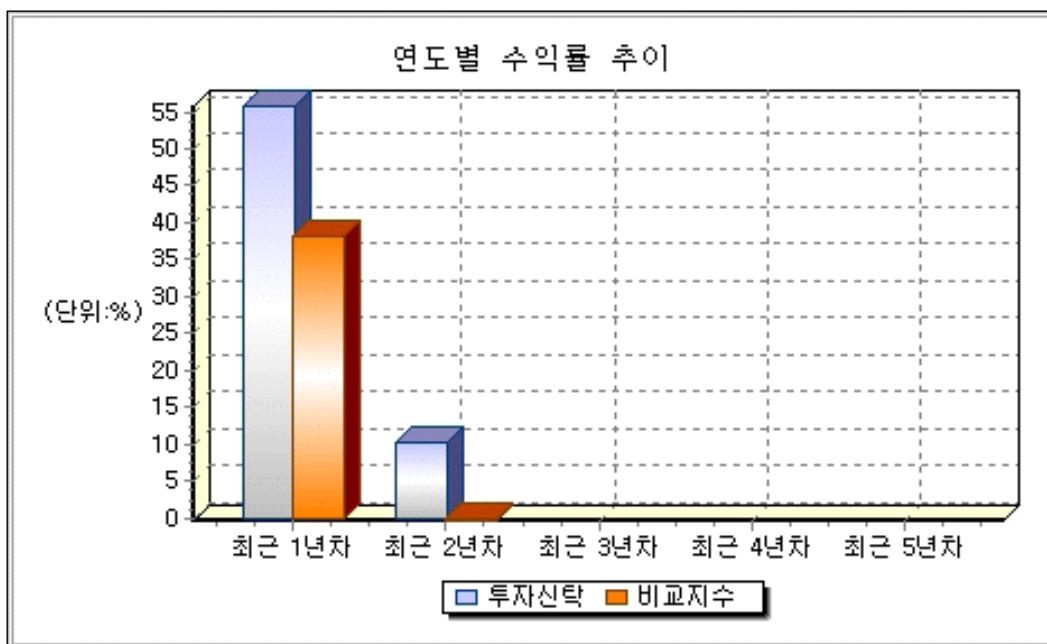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연도	최근 1년차 (20.01.28 ~21.01.27)	최근 2년차 (19.01.28 ~20.01.27)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5.77 %	10.30 %			
비교지수	38.18 %	-0.39 %			

- 비교지수 : KOSDAQ 지수 x 54% + KOSPI 지수 36% + Call x 1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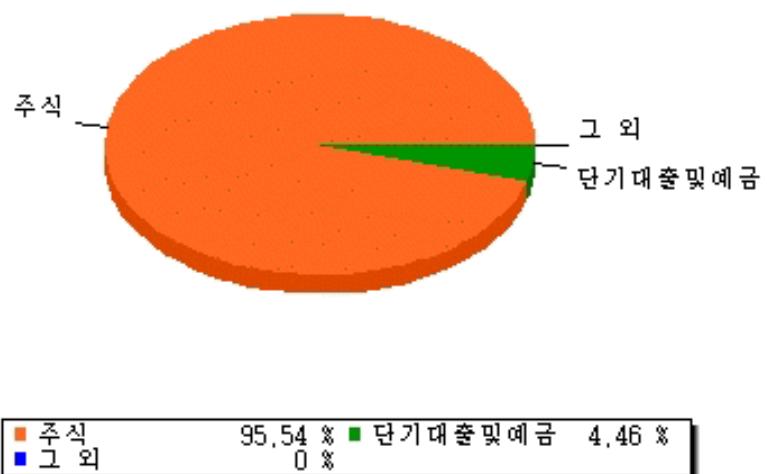
(9)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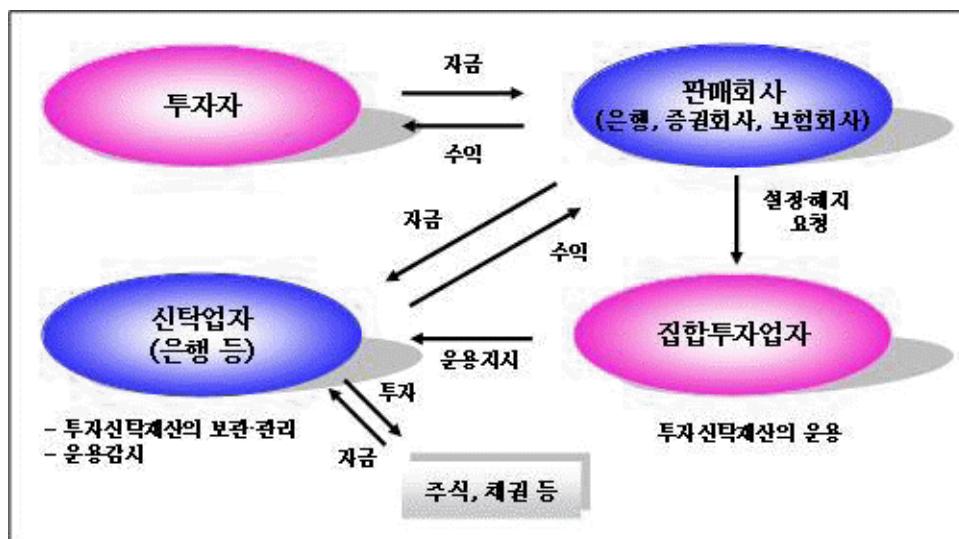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09.30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93	0	0	0	0	0	0	0	0	0	4	0	97
합계	93	0	0	0	0	0	0	0	0	0	4	0	97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16층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연락처 : 02-3774-7880, <a href="http://www.samsungactive.co.kr">http://www.samsungactive.co.kr</a> )
회사 연혁	2017.01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설립(납입자본금 300억)
자본금	300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자산운용(주)( 100% )
사업목적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업무</p> <p>가. 액티브 주식운용 전략에 의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1호,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p> <p>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p> <p>다. 투자일임업</p> <p>라. 투자자문업</p> <p>2.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p> <p>3.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p> <p>4.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p> <p>5.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p> <p>6. 상기 각 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p> <p>*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p>

주) 산정 기준일은 2019.1.1일 입니다.

## 나. 주요 업무

###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무상태표

제3(당)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2(전)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기말	전기말
<b>자 산</b>			
I. 현금및현금성자산	6,22,27	7,421,795,888	7,404,190,415
I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7,28	359,892,000	330,464,000
III. 상각후원가금융자산	5,8,22,27	43,708,298,306	41,835,495,954
IV. 유형자산	9	55,810,487	88,822,615
V. 사용권자산	10	162,651,815	-
VI. 무형자산	11	1,196,075,587	1,228,032,596
VII. 순확정급여자산	15	26,729,703	-
VIII. 이연법인세자산	24	215,288,978	199,094,725
IX. 기타자산	12	195,994,381	88,464,340
<b>자 산 총 계</b>		53,342,537,145	51,174,564,645
<b>부 채</b>			
I. 기타금융부채	5,13	5,748,468,620	7,185,347,349
II. 총당부채	14	26,826,713	26,237,986
III. 순확정급여부채	15	-	69,888,414
IV. 당기법인세부채	24	750,714,976	1,357,729,069
V. 기타부채	16,25	160,245,709	144,196,408
<b>부 채 총 계</b>		6,686,256,018	8,783,399,226
<b>자 본</b>			
I. 자본금	17	30,000,000,000	30,000,000,000
II. 기타자본구성요소	17	(224,245,135)	(18,573,492)
III. 이익잉여금	18	16,880,526,262	12,409,738,911
<b>자 본 총 계</b>		46,656,281,127	42,391,165,419
<b>부 채 및 자 본 총 계</b>		53,342,537,145	51,174,564,64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제3(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기		전기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I. 영업수익			17,700,381,880		21,422,324,968
1. 수수료수익	19	16,923,513,095		20,760,504,344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19,23	29,428,000		-	
3. 이자수익	19,23	747,440,785		661,789,248	
4. 외환거래이익	19	-		31,376	
II. 영업비용			11,882,552,847		13,144,938,575
1. 수수료비용	20	4,758,513,826		5,641,129,779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20,23	-		79,488,000	
3. 이자비용	20	9,735,174		-	
4. 외환거래손실	20	768,322		-	
5. 판매비	21	46,391,348		54,077,881	
6. 일반관리비	21	7,066,555,450		7,369,953,414	
7. 기타비용	20	588,727		289,501	
III. 영업이익			5,817,829,033		8,277,386,393
IV. 영업외손익			47,646,693		15,613
1. 영업외수익	22	47,714,573		28,963	
2. 영업외비용	22	67,880		13,350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65,475,726		8,277,402,006
VI. 법인세비용	24		1,394,688,375		2,002,644,920
VII. 당기순이익			4,470,787,351		6,274,757,086
VIII. 기타포괄손익			(205,671,643)		22,945,342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05,671,643)		22,945,342	
획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	(263,681,594)		29,417,104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4	58,009,951		(6,471,762)	
VIII. 당기총포괄이익			4,265,115,708		6,297,702,428
X. 주당순이익	26				
1. 기본주당순이익			745		1,04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라. 운용자산 규모

(2021. 1.27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재간접					
수탁고	6,906	0	0	13	0	0	0	0	0	6,918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펀드	위탁운용사	업무위탁범위
삼성코스탁벤처플러스증권투자 신탁 제1호[주식]	삼성자산운용	내부통제 업무 마케팅 업무 일반사무관리 업무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 (1) 회사 개요

회사명	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2가 50 전화번호 : 1566-2566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ibk.co.kr

##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생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전화번호 : 02)3774-76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samsungfund.com">www.samsungfund.com</a>

##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2) 투자신탁의 설정 ·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3)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4)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6)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라. 채권평가회사

###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티아이(주)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4층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 보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koreabp.com">www.koreabp.com</a>	<a href="http://www.nicepnri.com">www.nicepnri.com</a>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폐흡수 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한함)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 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active.co.kr](http://www.samsungactive.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항목 증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개회사를 선정합니다.</li> </ul>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증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증개회사를 선정합니다.</li> </ul>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투자

투자주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운용 효율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 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추가 납입하여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해산하는 경우
  -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 2) 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4)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6부. 첨부 서류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
2. 신탁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서의 사본
4.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b>집합투자업자</b>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b>신탁업자</b>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b>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b>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b>개방형(집합투자기구)</b>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b>추가형(집합투자기구)</b>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b>종류형(집합투자기구)</b>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b>증권집합투자기구</b>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b>금리스왑</b>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b>기준가격</b>	펀드의 매입·판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b>레버리지효과</b>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b>보수 또는 총보수</b>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판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b>수익자총회</b>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수익증권</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b>수탁고</b>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b>원천징수</b>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b>자산유동화증권</b>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b>판매수수료</b>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b>설정</b>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b>해지</b>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b>환매</b>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판매수수료</b>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b>환매조건부채권</b>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